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,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,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

		위반	위반	이상 위반
가.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79조제1항제1호	200	300	500
나.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법 제79조제1항제2호	200	300	500
다.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·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9조제1항제3호	200	300	500
라. 법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9조제1항제4호	200	300	500
마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·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9조제2항제1호	100	200	300
바.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2호	100	200	300
사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경우	법 제79조제2항제3호	100	200	300
아.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·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9조제2항제4호	100	200	300
자. 법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9조제2항제5호	100	200	300
차.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	법 제79조제2항제6호	100	200	300
카.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79조제2항제7호	100	200	300